

# <2025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> 차세대 작가 프로모션 전시 2차 공모 요강

## □ 공모개요

- (공 모 명) 차세대 작가 프로모션 전시 2차 공모
- (공모기간) 2025. 4. 18.(금) ~ 5. 12.(월), 16:00까지
- (사업기간) 2025. 6. ~ 11.(6개월)
- (공모내용) 전시개최 비용 지원
- (공모방식)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
- (지원대상)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는 기획사, 화랑, 사립미술관 등
- (전시공간) 서울 소재 전시공간
- (지원규모) 총 3억 원(1억 원x3개)

## □ 공모내용

- (세부내용)

구분	내용
지원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는 기획사, 화랑, 사립미술관 등 ※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, 고유번호증, 미술관등록증 중 택 1 제출 ※ e나라도움을 통한 민간경상보조금 직접 수령 및 예산 집행 가능 기관</li></ul>
신청 자격 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</li><li>•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</li><li>•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</li><li>• 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</li><li>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</li><li>• 기금모음행사(펀드레이징)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</li><li>• 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/연례전/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</li><li>•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</li><li>•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</li><li>•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</li><li>•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</li><li>•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</li><li>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</li></ul>

	<p>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•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•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</li> <li>•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</li> <li>•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</li> </ul>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시개최 비용</li> </ul>
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단체별 1억원 정액 지원</li> </ul>
지원 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및 전시장 임차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</li> <li>• 단체운영 목적의 기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</li> <li>• 부대비용 : 간담회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</li> <li>•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: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</li> <li>•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</li> <li>• 기타 사항: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</li> </ul>
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건</li> </ul>
지원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전시장소) 서울 소재 전시공간</li> <li>• (전시장르) 회화, 조각, 설치, 미디어·디지털아트 등 시각예술 분야 전 장르 ※ 관례적인 회원전, 단체전, 학교 단위의 출업 작품 전 불가</li> <li>• (작가구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5년 기준 만 19세~만 39세의 한국 국적 작가로만 구성</li> <li>- 전시개최 시 최소 10명 이상 참여 필수(팀 단위의 작가단체는 1명으로 산정)</li> </ul> </li> <li>• (전시기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시기간은 7.1.~10.31. 사이에 선택</li> <li>- 미술축제 기간(9.1.~9.30.) 전 기간 포함 필수</li> <li>- 설치·철수일 제외, 60일 이상 전시 개최</li> </ul> </li> <li>• (전시입장료) 무료</li> <li>• (프로그램 구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영 20회 이상 운영</li> <li>- 체험 워크숍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 10회 이상 운영</li> </ul> </li> <li>• (만족도 조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람객 만족도 조사 200부 이상(조사문항 예정 제공)</li> </ul> </li> </ul>
우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차세대 유망 작가 발굴 전략 수립 및 프로모션에 주력한 전시</li> </ul>
의무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 2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고,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</li> <li>• 총 보조금(지원금) 증빙 필수</li> <li>•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, 작가 및 출품작 수 등 사업의 규모가 변경 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·조정될 수 있음</li> <li>•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,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 단체에게 있음</li> <li>•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</li> </ul>

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
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  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 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  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 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-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  - \*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'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'관련)
  - \* 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
    -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-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
-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
  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 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
-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, 비평가, 작가사례비(아티스트피)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
-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(22.2)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
- 매년 '시각예술실태조사 (\*-(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응답필수
- 전시 운영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
- 「예술인고용보험제도」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
  - ※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18조(과태료)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- \* '문화예술용역'이란?
 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-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(누리장터) 이용 필수
- 선정자 대상 사전워크숍·성과공유회 진행 시 참석 필수
-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  - \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
  - \*\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
- e나라도움 상 집행·정산·실적보고·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
-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
-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, 적극 협조
-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

○ (지원항목)

목	세목	세세목	내용
인건비	기타인건비	기획자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괄 기획자 1인 사례비 * 지원금의 10% 이하 책정 가능</li> </ul>
	일용임금	일용임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천징수, 사회보험료</li> </ul>
운영비	일반 수용비	작가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작품 대여 및 작가 사례비</li> </ul>
		전문가 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천징수</li> </ul>
	홍보 마케팅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의 원고, 번역 진행 수어 도슨트 등 일회성 투입인력 사례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천징수</li> </ul>
	임차료	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고매체수수료(언론홍보, SNS등)</li> </ul>
	일반 용역비	대행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홍보품(기념품), 리플렛, 포스터 등의 생산/인쇄비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시 운영에 필요한 물품, 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홍보대행비(홍보물 디자인, 영상 제작 등)</li> <li>행사대행비(워크숍 운영 대행 등)</li> <li>작품 반입·반출 및 설치·철수 용역비</li> <li>공간 디자인 및 구조물 설치·철수 용역비</li> <li>기타 용역비(예술경영지원센터 승인 필요)</li> </ul>

\*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상 확인 가능

□ 공모접수

- (접수기간) 2025. 4. 18.(금) ~ 2025. 5. 12.(월), 16:00까지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
- (제출서류)

연번	서류명(파일형식)	제출	방법
1	•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		e나라도움 작성 제출
2	• 지원신청서 및 불임서류(HWP)	필수	e나라도움 첨부 제출
	[불임1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		
	[불임2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		
	[불임3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		
	[불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

	[붙임5]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협약서		
3	•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, 고유번호증, 미술관등록증 중 택 1 사본 (PDF 파일)		
4	• 포트폴리오(PDF) *자유양식 10페이지 이내	선택	

## □ 공모심의

- (심의방법) 국내 미술 관련 전문가(5~7인)에 의한 심의 진행
  - (1단계) 서류심의(1.5배수 내외 선정), (2단계) 면접심의
- (심의기준)

연번	항목	세부내용	배점
1	신청주체의 전문성·활동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주체 및 총괄기획자의 활동 이력 등 전문성</li> <li>• 최근 3년 이내 전시실적 및 예술현장 기여도</li> </ul>	30
2	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</li> <li>• 사업내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개발계획의 충실성</li> <li>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매뉴얼 등 관리계획의 구체성</li> </ul>	40
3	사업계획의 기대도·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내용의 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</li> <li>• 사업의 주제, 작품·작가 등의 시의성</li> </ul>	30
합계			100

## □ 추진절차



지원금 교부(1차)	6월	• 교부신청 접수 및 확정(1차)
▼		
지원금 교부(2차)	7~8월	• 교부신청 접수 및 확정(2차)
▼		
사업추진	6월 ~ 11월	• 사업 수행
▼		
정산 및 실적보고	12월	•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• e나라도움 잔여 절차 마무리

\*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문의처

- (사업 관련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
  - (유선) 02-2098-2910 (이메일) [visual@gokams.or.kr](mailto:visual@gokams.or.kr)
  - (문의 가능 시간) 평일(월~금) 10:00~16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
- (e나라도움 문의) e나라도움 고객센터
  - (유선) 1670-9595